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도로법제77조(감독관청의 승인)의 규정에 의거 구도노선인정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승인으로 구도로의 관리주체가 사하구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구도로와 관련된 도로점용료 등의 세입귀속 주체가 부산광역시에서 사하구로 변경되어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임.

2. 관계법령

- 가. 도로법제43조(점용료의 징수)
- 나. 도로법제86조의2(과태료)
- 다.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

3. 주요골자

- 가. 조례신설의 목적
- 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
- 다. 도로점용료 징수시기 및 분할납부 방법
- 라. 점용료 징수방법 등

4. 검토의견

본조례 제정건은

- 도로관리의 주체가 종전의 광역시(도)에서 광역시(도), 구(군)으로 이원화 하도록 2002. 9. 5부로 도로법제77조등 관련법에 명시되어 구도의 노선이 인정되었으며,
- 특히 도로점용료징수는 모든 도로에 대하여 시세입후 각구에 징수교부금 30% 지급해오던 방식을 변경하여 시·구도 관리차별로 세입조치하고, 광역시는 시세입후 구에 50% 교부금을 지급하므로써 도로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는 물론 구의 세입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 조례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